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시행과 진단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확대(안 제3조)

도시숲등의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2)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3)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

2) 가로수 진단조사의 대상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명확히 정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에게 분석 의뢰하도록 함

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안 제10조)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등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사무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7. ~ 6. 1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제7호”를 “법 제5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숲등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3. 가로수의 조성구역별 식재 수종 선정
4. 띠녹지(가로수 식재 지역에 조성하는 긴 선형의 숲) 조성 및 관리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방안
6.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자연재해 예방 및 열매 등의 피해 방지 방안
8.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9. 가로수의 옮겨심기·바꿔심기·메워심기 사업의 대상 및 방법
10. 가로수 제거 사업의 대상, 사유 및 복구
11.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의 대상, 강도, 방법, 수형, 회복계획
1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고,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제1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2항
관련)

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

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산림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교통량, 보행자 수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식재할 교목의 흉고직경이 6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이 8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량과 보행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식재할 교목의 흉고직경이 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 가로수의 수량 및 생육상태, 병해충 감염·고사(枯死)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수량 및 생육상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3)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 선정 시에는 아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한다.

-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6) 생태계 보전·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식재한다.

1) 수형(樹形)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재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7) 가로수의 수고(樹高)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3. 가로수의 심는 지역 기준

가. 가로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異道)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 된다.

1) 도로의 갓길

2)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3)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4)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1)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2)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 3)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인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당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 또는 이설하거나 그 밖의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의 관리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 3) 식재 배열이 극히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 4) 병해충 감염, 재해·재난 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및 차량 등의 통행,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객토(客土)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제7조제2항 관련)

1. 진단조사 대상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한다.

2. 진단조사 시기

진단조사는 대상 수목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한다. 다만 자연 재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업 실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진단조사 절차 및 방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성, 타당성, 위험성 등을 「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3호에 따른 나무의사에게 분석 의뢰하여 진단조사 한다.
- 2) 진단조사자는 대상 수목의 현황조사 및 세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진단조사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조사표에는 진단조사자의 종합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현황조사 및 세부 진단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현황조사	○ 위치, 수종, 수령, 수고, 흉고, 수관폭, 기울기 ○ 단목, 도시숲, 가로수 등 대상 수목의 유형 ○ 지지대, 당김줄, 쇠조임 등 안전시설 설치 유무 ○ 주변 시설물, 최근 피해 현황
2) 세부 진단조사	○ 가지치기 사유 - 균열·썩음 등으로 인한 위험, 병해충 관리, 고사지(말라죽은 가지) 제거 - 수형관리,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T/R률) 조절, 도장지(지나치게 옷자란 가지) 정리, 토양과 수목의 경계부 및 줄기 멍아지 등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정리 - 통풍·채광 및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제거, 간판 가림 등으로 인한 이격거리 유지
	○ 제거 사유 - 고사, 쓰러짐 위험이 있는 근원부 썩음, 부러짐 위험이 있는 가지 썩음, 병해충, 기울기 정도, 생육저하, 간벌 등 밀도 조절 - 도시개발, 배수 불량

구분	내용
	○ 위험성 주요 요인 평가 - 사람, 건물, 전선 등 위험대상물 평가 - 지형(경사 등), 토양의 특성 등 입지 평가 - 수목의 결함, 쓰러짐 위험, 가지의 부착과 결함 등 대상 수목 평가 ○ 위험성 진단 - 경(Low) : 무시할 정도의 위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중(Moderate) : 사소한 정도의 위험, 수목을 유지 또는 필요 조치 시행 - 심(High) : 중대한 정도의 위험, 수목에 필요 조치 시행 - 극심(Extreme) : 심각한 정도의 위험, 가능한 빠른 필요 조치 시행, 대상 수목 주변 접근 즉시 제한
3) 사업방식 결정	○ 사업 시행 시기 : 세부 진단 조사 중 위험성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 결정 ○ 가지치기 정도 : 세부 진단 조사결과에 따라 고사지만 제거, 작년 생장량 제거, 정형식 제거, 수고·수관 제거 등 결정 ○ 제거 정도 : 세부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제거 본수 등 결정
4) 회복계획 (가지치기)	○ 수세회복계획(물관리, 영양관리 등), 수형회복계획, 병해충방제계획 등 회복계획의 적합성 검토
5) 종합의견	○ 1) ~ 4) 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단조사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u><신 설></u>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 -----. 1. 2. (현행과 같음) 3. 도시숲등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6조의 2제1항 본문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3. 가로수의 조성구역별 식재
수종 선정
4. 띠녹지(가로수 식재 지역에
조성하는 긴 선형의 숲) 조성
및 관리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방안
6.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자연재해 예방 및
열매 등의 피해 방지 방안
8.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
제
9. 가로수의 옮겨심기·바꿔심
기·메워심기 사업의 대상 및
방법
10. 가로수 제거 사업의 대상,
사유 및 복구
11.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의 대
상, 강도, 방법, 수형, 회복계획
1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법 제12조제3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략)

<신설>

제1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

-----.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고,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은 별표와 같다.

-- 별표 3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연 락 처	(042) 481 - 8833